

< 수시 공시 >

2016. 12. 2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집합투자기구	변경 문서	변경 내용
신영신종법인용MMF제4-26호	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/간이투자설명서	1.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반영 2. 투자자 유의사항 및 주요 투자위험문구 강화
신영신종MMF제4-35호		

2. 공시 사유 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
3. 변경 시행일 : 2016년 12월 2일

4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